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507호
의결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의년월일 : 2009. 10. 16.

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개정이유

현행 『회의 규칙』 제90조 징계 요구와 회부, 제91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『지방자치법』 제87조 징계 요구 규정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의장의 징계 회부는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선행된 후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부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함(제90조)
-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를 징계요구서 제출로 변경함으로서 관련 없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(제91조)

개정 규칙안 : 덧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90조제1항 중 『징계대상의원(이하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』을 『징계대상의원(이하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』으로 한다.

제90조제2항 중 『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』를 『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』로 한다.

제91조제1항 중 『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』를 『제90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』로 한다.

제91조제2항 중 『제9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』을 『제90조제2항, 제3항에 따른』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0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<u>징계대상의원(이하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</u>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<u>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</u>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	<p>제90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----- <u>징계대상 의원(이하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징계사유를 기재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----- ----- -----</p>
<p>제91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<u>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</u>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.</p> <p>② <u>제9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1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-----<u>제90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<u>제90조제2항, 제3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86조(징계의 사유)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제87조(징계의 요구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.

② ~ ③ 생략

【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】

제90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 ~ ⑤ 생략

제91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 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.

② 제9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